

## 제 91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2월 1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2월 1일 하오 12시 4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남진, 천철수, 정응표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제 90회 제 1차, 제 2차, 제 3차 회의록 통과
    - 내무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 영해동민 사범학교장
    - 상과대학 이전 반대 투쟁경과 보고
  - ◆ 부의안건
    - 1) 진정서 처리의 건 - 영해동민
    - 2) 시정감사반 편성
8. 토의사항
  - ◎ 제 90회 제 1, 2, 3차 회의록 통과
    - 김경인 의원 퇴장 재석 12명

- 박찬대 서기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무분과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박 두 순 의원

- 시내 영해동 1가 2번지 조정근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송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진정서 접수 상황 보고 - 영해동 서동순외 9명  
박찬대 서기 낭독

◇강 영 락 의원

- 소개 발언하다.
- 진정서 접수 상황 보고 - 사범학교장
- 박찬대 서기 낭독

◇김 성 균 의원

- 소개 발언하다.

◇의장 김 삼 성

- 문사위원회에 회부 선언하다.

◎ 상과 대학이전 반대투쟁경과 보고

◇의장 김 삼 성

- 보고하다.
- 영해동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2건)를 정식상정 선언하다.

◇강 영 락 의원

- 인화질물을 취급하는 공장의 시설면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본 건 공히 소방서장에게 선처하도록 의회의 결의로써 건의함과 동시 진정인등에게 차지를 통보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시정감사 반편성의 건

◇조 양 순 의원

-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과거의 모순된 예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금반은 의장단에게 일임 지명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명 남 철 의원

- 의장단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의장에게 지명토록 개의회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 사청이 있었다.

◇이 정 권 의원

- 과거의 예와 같이 각 의원 지원제로써 편성하도록 재개의하여 각 동의를 표결에 부처 이정권 의원의 재개의는 찬성이 없어 폐기되고 명남철 의원의 개의회에 대하여는 재석 12명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다.

◇의장 감 삼 성

- 각 감사위원 반별지명
- 제 1반 - 김일섭, 조양순, 명남철, 이정권, 정응표 의원
- 제 2반 - 김상태, 강영락, 김창희, 김남진, 김성균 의원
- 제 3반 - 김경인, 임석희, 김상대, 박두순, 천철수 의원

◇강 영 락 의원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중 내무위원 7인을 6인으로 산업위원 4인을 5인으로 개정하도록 차후 문안으로 제안할 것을 참고로 말하는 바이며 제 90회 정기의회의 의사 일정표를 검토하면 오는 18일에 본 회의가 개최되어 신년도 예산안이 상정하게 되는데 기간이 너무 늦은 감이 있으니 그 안

에 본 회의를 갖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대집행부 질의를 하여 예산면에 반응(반영)시키도록 의상일정을 변경함이 좋을 것 같다.

◇이 정 권 의원

- 원안대로 추진함이 좋을 것이다.

◇김 상 대 의원

- 근간 목포일보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금반 목포경찰서 사찰진에서 또 간첩1명을 체포하고 그 연루자 일단의 색출도 시간 문제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우(한모통이)인당 목포에서 2회나 걸쳐 무시무시한 간첩을 체포한 것을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악질 도배들이 준동하고 있는가 추측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목하 국회에서는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도상에 놓고 여야간 왈가불가 정쟁이 버러지고 있는 판국인데 해 개정안 전문 제40조를 본 의원도 3독까지 하여 보았는데 그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진바 있는 것이다. 금반 당의회의 결의로써 국회의장에게 본 건 통과촉진 건의문을 제출할 것을 긴급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조 양 순 의원

- 김상대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논급하기를 회피하는 바이며 그 동의자체가 본 의원의 생각과는 각도가 다른바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2회에 걸쳐 남파간첩을 체포한 사찰진의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자는 의사인줄로 알았는데 그 근본취지가 다른 것이며 국회에서는 본 건으로 인하여 치열한 정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야당인 본 의원의 소신은 종전의 국가 보안법 형법 기타 법 등으로도 능히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리라고 믿어져 김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바이며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동의하는 바이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의장 김 삼 성

- 표결을 선언하다.

- 조양순 의원의 유공자 표창 동의는 재석 12명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김상대 의원의 긴급동의는 재석 12명중 찬성 7표로 가결되다.

◇강 영 락 의원

- 김상대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이미 통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정쟁이 야기된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한 처사라고 느껴지며 역전광장보수에 물심양면으로 전력을 경주한 목포역장에게 당 의회의 결의로써 감사장을 수여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 선언하다.

( 하오 12시 40분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2월 1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91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2월 18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2월 18일 하오 4시 0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1명  
결석의원 정응표, 김남진, 박두순, 이정권, 조양순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 92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2) 청원서 처리상황 보고 - 문사위원장
- 3) 진정서 처리상황보고 - 소방서 목사관계 통보관계
- 4) 건의문 발송상황 보고 - 대국회의장
- 5) 신년도 시정방침 연술 - 시장
- 6) 각 종 예산안 제출 이유설명 - 총무과장
- 7) 신년도 교육행정방침 연술 - 교육감
- 8) 교육위원 예산안 제안 이유설명 - 사무장

#### ◆ 부의안건

- 1) 단기 4291년도 제 8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수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단기 4292년도 목포시 동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단기 4292년도 목포시 도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공전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7)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국민주택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8)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재건주택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9)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일시차입안
- 10)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11)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8. 토의사항

· 개의에 앞서 간첩색출검거에 공을 세운 목포경찰서장의 사찰 유공자 및 역광장로면 보수에 전력을 경주한 목포역장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있었음.

### ◎ 제 91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하고 이의 없음으로 통과되었다.

### ◎ 청원서 처리상황 보고 목사 관계

#### ◇김 상 대 의원

- 본 건 교육위원회 측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안서진 것으로 보아져 그 심의를 보류하고 있으니 차기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 ◎ 진정서 처리상황 보고 - 소방서로부터 통보관계

#### ◇서기 박 찬 대

- 소방서장으로부터의 통보문 낭독하다.

### ◎ 건의문 발송상황 보고

#### ◇서기 박 찬 대

-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건의문 낭독하다.

◇김 상 태 의원

- 본 건 전차 회의에서 건의문 발송이 채택 되었으나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하도 어마어마해서 발언할 수조차 없는 순간 의장은 전격적이며 편파적인 사회로써 이를 통과시켰는데 이의 불법 결의를 취소하여주기 바라며 불연이면 야당 소속의원들은 총퇴장하겠다.

◇김 상 대 의원

- 김상대 의원은 모순도 이만저만인 발언을 하였는데 지방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김의장의 편파적 사회운운이나 조양순 의원의 반대 발언이 끝난 다음 본 건에 대한 발언자가 없으므로 표결후 타안건으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오히려 김상대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여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전차회의록에 기재된바 김상대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으로 의장은 표결을 선언 통과시켰다. 이것이 의사 진행의 졸업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것에는 의사일정에 채택여부를 결정지은 다음 그 안전상 모순을 공식으로 사과 하여주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그것은 회의록에 불기재 되었으리라고 보아지며 그 발언은 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는 이 이상 논의하지 말기를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지방의회의 명예와 체면을 발전향상 시키기 위하여 발언하는 바이나 현하 국가 보안법안을 조상(도마위)에 놓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논의를 거듭하



고 있으며 전국민이나 국제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킬뿐더러 UP기자가 대통령과 설문을 하는 등 지극히 중대한 법안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사중 건의안은 시민의 의사를 신중히 검토하여 중앙에 반영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의 의사 진행은 그 방법이 졸렬하였고 비겁하기 짝이 없었으며 모순 구렁이였던 것이다. 여당 측 의원들은 이 처사를 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반성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장내가 소란하여 지다. )

◇의장 김 삼 성

- 30분 휴회를 선언하다.

- 속개를 선언하다. 11시 15분 현재

◇김 경 인 의원

- 김상대 의원이 동의하여 채택된 안건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의 방법에 졸렬하였다는 것을 의장은 사과 하기를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의사진행에 잘못은 없었다.

◇강 영 락 의원

- 중대한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왈가왈부 불미스러운 발언이 연발되는 것이나 여당의원들은 시민과 야당 측에 대하여 미안과 반성의 태도를 표시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김 창 희 의원

-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동정불금이나 의석이 여당보다 부족하여 표결에 패배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 건에 대하여는 이로써 논급을 중지하고 시정방침 연설에 임하여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김 상 대 의원

- 김경인 의원과 강영락 의원은 불법회의 혹은 사과하라는 등 운운하나 언

어도단이다 당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기회에 의결하였다면 이유가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건의할 것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김 성 균 의원

- 김경인 의원은 사회가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을 채택도 하기 전에 표결을 선포하였다고 하나 우리회의의 통례가 건의안 같은 것은 이렇게 하여왔던 것이며 강영락 의원의 발언에 시민 전체가 민주당인 것 같은 말은 삼가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우리회의의 통례가 무엇이겠는가 그날 이 안건을 건의하기 위한 소정절차를 밟지 않은 책임을 지라는 말이다.

◇의장 김 삼 성

- 의상진행상 중복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썼는지도 모른다.

- 오전 회의 휴회를 선언하다.

- 속개를 선언하다.

( 하오 1시 20분 )

◇강 영 락 의원

- 오전 회의에는 여야가 심각한 분위기로 왈가불가하였으나 사중정쟁이란 있을 수 없고 의장과 동의자는 책임 관념적 입장을 떠나서 정치도의적 입장에서 미안한 감을 표시하여주면 해결되리라고 보아진다.

◇김 성 균 의원

- 당일의 사회자인 의장과 동의자인 김상대 의원은 무슨 말을 할는지 모르나 그 날 야당의원들의 무능을 폭로한 것밖에 아무 것도 없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으로 인한 왈가왈부 논쟁을 일으키게된 점을 의사진행의 줄열인가 한다. 이 이상 논의를 끝내고 일정에 따라 시장은 시정방침 연설로 들어갈

것을 선포하다.

◇하 시장

- 시정방침 연설

( 별첨과 같다 내용 생략함 )

◇김 창 희 의원

-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느낀바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 1) 하시장은 대체적으로 내무에는 잘되어간다고 보나 외교(대외)방침의 줄열을 지적하니 할 수 없다. 즉 항만시설에 외교적 절충이 없어서 매몰상태에 놓여있으며 잔교증축등의 방법을 수립하여주기 바란다.
- 2) 세입부과사무에 있어서 현하(현재)당시의 상공업자는 근근히 사업을 유지하는 정도인데 부유층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약자에게 과대한 부담을 시키고 있다 불로소득의 세원포착에 치중하기 바란다.
- 3) 세금징수에 있어서도 다액채납자는 원만히 조치하는 반면에 약자에게 차압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 4) 도로행정에 있어서 목포항의 관문인 해안선 특히 동명동 어판장 부근의 포장이 신년도 예산에 계상안된 것은 유감이다.
- 5) 근근(근래) 동명동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경유서류가 돌아올 것이니 시장은 시발전의 중대성에 조감하여 당국에 절대적인 요청을 하여 성사 되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 6) 해안선도로의 하양장 부근의 포목상등이 준비하니 도로 행정에 각별유의 하여주기 바란다.
- 7) 역전자유시장은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항상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이 기회에 합법적인 허가를 하여 시장화시킬 수는 없는가
- 8) 동명도 스단다드 회사측의 대지에 거주하는 200세대 주민은 거개 전재동 포인데 갑자기 철거명령이 내려 당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여하히 할 것인가
- 9) 도서관의 완비책을 강구하여주기 바란다.
- 10) 공설운동장의 설치책 여하
- 11) 목포의 관광시설이 불충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 여하

◇김 성 균 의원

- 시장님의 신년도 시정방침 연술을 듣고 느낀바 건전하고 실천성있고 민  
음직하다고 보아지는 반면 작년도와 대동소이하여 앞을 내다보는 점이 결여  
되어 있다.

- 1) 당목포시의 인구가 타시는 격증일로의 현상인데 반하여 해방직후와 비교  
하여 대동소이한 이유여하
- 2) 정확한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5대민의원 선거시에는 2인 이상의 민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데의 구상 여하
- 3) 삼학도 공사가 겨우 35%진척이라고 하였는데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완공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이 아는데로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 4) 삼학도 갯바위간의 매립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 5) 연동터진목서부터 산정국민학교까지의 도록 확장 문제에 대하여 그 후의  
대책 여하
- 6) 유달산의 유원지화를 하기위한 산림녹화의 구상 여하
- 7) 정병조씨 토지 승소한 15만평은 하처에 쓸것인가
- 8) 항도로서 해수욕장이 없고 도시로서 공회당의 시비(시설준비)가 없는데  
대한 대책은 여하한가
- 9) 임박하는 갈수계(갈수기와 동의)에 대비하여 각저수지별로의 저수량과 그  
에 대한 영향은 어떠하겠는가

◇김 경 인 의원

- 시장님의 시정방침연술은 예산상의 설명이 아니고 연차 계획으로 물동  
계획적인 안일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작년과 같이 구태의연한 감이있어 유감  
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1) 인접면의 합병에 대한 구상 여하
- 2) 목포는 집산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도정시설이 있는 공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원료배급을 2회밖에 받지못한데 대한 대책
- 3) 식료품 시장이었던 남교동시장이 일용품시장화 하는데 전체시민이 균등하  
게 수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즉 도로 19호 선중 남전 앞까지의 상  
가는 눈에 띄일 정도이나 그 다음 공동 변소에 통하는 도로의 상가는 한  
산하기 짝이없는바 그 이유는 객선 잔교에 통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점을 타개하여 그 시가의 공동 번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 4) 내향준설로써 항만 보호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5) 유달산의 유원지화 문제인데 어느 기회에 모 인사로부터 몇 사람에게 청부식(도급)으로 맡겨주면 구상하여 보겠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는데 시 재정으로 무망하다면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볼 의향은 없는가

◇하 시장 답변

- 김창희 의원이 질문하신

- 1) 외교(대외) 문제박약 운운에 대하여는 차후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외교는 낫부닥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것이고 구체적인 말씀 차후 좌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리겠다.
- 2) 잔교증설문제는 과반 중앙의 시설국장의 래목기회에 본인의 안내로 현장을 답사하고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 3) 호별세부과 방법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도 방침과 배치된다면 조사하여 시정하겠다. 그러나 불로소득 조사라는 것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진언하여주기 바란다.
- 4) 도로 포장 문제에 있어서는 3년전부터 중앙과 절충하고 잇는 실정인바 콘크리트포장을 하기 위하여 시멘트 특배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5) 공유수면매립건은 관계서류가 접수 되는대로 중앙요로에 절충하여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 해안선 노점 취체문제는 해무청, 경찰서, 시 3자 합동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나 이렇게 되면 나가도록 할 수잇는 대책 즉 재정이 앞서는 관계로 숙고하여 처리할 문제인 것입니다.
- 7) 역전자유시장은 상부로부터 철거하라는 지시에 접하고 있으나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못하고 잇는 형편인바 정식시장으로 전환시킬려면 역시 재정문제가 앞서는 것입니다.
- 8) 스단타회사 부지관계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였던바 태반이 무허가건축물로서 그 결과는 삼학도 주민 철거시와 비슷한 현상인 것입니다.
- 9) 시립도서관 확장문제도 상이용사회를 분리시켜야하는데 이것도 재원이 앞서는 것입니다.
- 10) 공설운동장과 해수욕장문제는 갯바위 매립공사가 여의대로 진척안되어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 11) 유달산 유원지화 문제는 50천만원만 소요되면 공원화 시킬수 있는 것이나 요는 상수도공사가 실현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 12) 인구 증가 동태를 파악하여 민의원 2인을 선출시키자는 문제와 인접면 병합 문제는 최근 이르면 의장과 상봉한 바 있었으나 이르면을 흡수하게된다면 무안군은 1인이 감소되는 반면 목포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애로이고 삼호면을 편입시킨다면 농촌행정 운영상 재정적 애로가 지대한 것입니다.
- 13) 연동 도로문제는 중앙 방침이 제1차로 서울 - 부산간의 포장공사를 마치고 서울 - 목포간의 공사에 착수하리라 하는 바 이러한 관계로 아스팔트 공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14) 갈수계(계절)에 대처한 급수문제는 각 수원지의 저수량을 조사하였던바 명년 강우계(계절)까지는 현재와 같은 급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 15) 시가지 공동번영책에 대하여는 차후 여러분과 연구하여 불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16) 잔교증설 및 내항준설 문제는 차후 상의하기로 합시다.
- 17) 유달산 유원지화에 대한 청부식(도급)같은 것도 숙고한 후 결정 지을 문제일 것입니다.

#### ◇강 영 락 의원

- 행정책임자의 시정연술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이상론을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현실과 운영면을 떠난 질의는 삼가 하여주기 바란다. 본 의원이 행정부에 부탁하고자 한 바는 부두의 해방을 위시로 사업면에 치중하여주기 바라며 시정연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의장 김 삼 성

- 각 동의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 교위관계 제외 )

-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를 선언하다.

#### ◎ 교육위원회 교육행정방침 연술

◇교육감 박 세 문

- 교육행정 방침 연술하다.

◎ 단기4292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 경 인 의원

-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장 김 삼 성

-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김 상 대 의원 긴급동의

- 목포시 교육위원회 재산 중 사범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내 모유지가 기한부로 임차하였는바 그 조건은 타인에게 매도나 양도할 수없다고 되어있는데 측문하바에 의하면 해 토지를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 매도하려고 수속 중이라 하니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조사단으로 김상대, 김상태, 임석희 의원을 지명하다.

◇김 성 균 의원 긴급동의

- 거(지난) 11월 27일에 목포극장에서 행한 상대이전반대 시민대회석상에 서 강영락의원의 동의로 목포지구 시군으로 나누워 분도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 가결되었는바 이 기회에 당시 의회의 결의로써 본건 분도운동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중앙요로와도 절충하고 적극추진토록할 것을 긴급동의 해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앞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이 나오리라고 보아지는바 상대 이전반대를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 분도운동을 내놓는다면 대내외적으로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되는 것이니 본 건은 당분간 연구기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 영 락 의원

- 김성균 의원 동의에 찬성 발언하고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명칭은 분도추진 연구위원회로 결정 짓고 그 위원으로 김성균, 정응표, 명남철, 이정권, 강영락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지명한다.

- 산회를 선언하다.

( 하오 4시 00분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2월 20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김 경 인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91회 제 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2월 26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2월 26일 하오 4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김남진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내무분과 위원회 종합 심의 보고

#### ◆ 부의안건

- 제 11회 시정감사 결과 보고
- 기타 제 2차 회의 시와 동일함.

### 8. 토의사항

#### ◎ 내무분과 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 ◇박 두 순 의원

- 교위추경 및 수특추경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으나 일반회계 추경 중 사회사업비(관) 공전식 관계보조 20만환을 삭감하고 기타는 원안 통과를 보았

습니다.

◎ 단기 4291년도 제 8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김 성 균 의원

- 본 건 각상위분과 위원회에서 심심검토한바 있으니 내무위원회에서 통보한 안대로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고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4291년도 제4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김 창 희 의원

- 본 건 역시 양건 공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제 11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제1반 대표

◇정 응 표 의원

- 금년도 실시된 공무원 처우개선의 기회를 계기로 하여 시청산하 전 공무원은 가일층 자숙자성하여 공무원의 근본을 고수하여주기 거듭부탁하는 바이며

- 1) 시에서 일년간 지불한 주식대가 일반회계 수특등을 합하여 물경 620여만 환에 달한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라 할 지라도 현금 출납리(공무원)는주의하여 지출하도록 하기 바란다.
- 2) 여비지출에 있어서 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시청직원이 일일평균 2인씩 외지에 주재한 형식이 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사실상 출장을 안가고도 명령이 되어있는 사실과 거개 서면복명서가 없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출근부와 출장명령등을 대조하였든바 출장인과

출근인의 이중날인이 248일에 이르렀으니 의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점 신년도부터는 각별유의하기 바란다.

- 3) 회계관계문서 처리에 있어서 각지출증빙서류가 10월분부터 편철 안되어있는 것은 유감이였고 모 경비지출은 영수증이 없이 15만원의 거액을 지출한 사례등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도정감사나 심계원감사관계등의 접대경비가 서류상 정비안되어 있었다.
- 4) 수도시설면을 검토한바 신설이 24건이나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종 정치성과 권력등이 개재되어있었고 동일한 시의원이라도 하후하박하는 관계가 열보였으니 순수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주기 바란다. 예를 들면 죽교동은 2만2천명을 점하고 있는데 86개의 수도가 있는가하면 영해동 같은 곳은 4천2백명의 인구에 172개나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신설을 할 경우에는 여사 부족한 동에 치중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며 민주행정의 근본이념을 망각한 수도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5) 일개동에 동일한 물품의 구입과 인쇄비지출이 수십 건씩이나 있는데 이것을 수십번씩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은 3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에 부하게 되는 고로 이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으며 그 단가의 고저가 있다는 것도 묵인 못할 처사이였다.
- 6) 시청에서 구독하는 신문 53부가 있는바 이름도 모르는 신문사 등에 축하광고료 등을 매월 상당액 지출되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어떠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는가
- 7) 관인도용사건에 있어서는 저반 시의원으로서 여사한 혐의를 입어 법의 심판으로서 무죄언도를 받은 사실도 있거니와 이에 대하여 당무자의 관심은 관인사용부 같은 것을 비치하여 이러한 착오발생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 ◇이 정 권 의원

- 1) 시정계 - 동직원의 신원 보증서류에 있어서 태반이 기간경과분이고 보증인의 사망, 이동분이 거개인데 방치해두고 있다.
- 2) 연말까지는 12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니 동사무소 수선과 동장위로등에 충당하여주기 바란다.
- 3) 관재계 - 미수된 대가료의 급속정수를 요망한다.
- 4) 지도계 - 공채소화에 있어서 각동에 배당하여 우금 비소화된 분은 별도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 5) 청원 국민저금대장의 문서정비가 안되어 있었다.
- 6) 국채와 공채를 수일씩 유용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기를 바란다.
- 7) 서무계 - 우편료 지불상황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합이 안되어 있었다.
- 8) 숙직료 지불을 서무계에서 인수대행 하였다는데 아직 미지불분이 상당액 있었다. 조속 지출을 요망한다.
- 9) 임시직원의 배치는 인건비 지출 해당비목의 과·계에 배치하도록 요망한다.
- 10) 저반의 직원 감원은 그 방법이 정실개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 이유는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제외되고 사무성적 불량하다하여 감원되었음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 11) 회계계 - 실지로 출장은 안갔는데 여비지출한 건수가 상당액에 달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모경비보충운운으로 충당시켰다하여 규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복명서의 구비가 없었음은 유감이였다.
- 12) 예산편성 당시는 관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여놓고 이를 관외여비에 유용한 사실이 있는바 사실상 관내출장한 여비는 지급 않고 허위조작의 관외여비를 지출하였음은 모순이 아닌가
- 13) 관외여비지출에도 선후가 바뀌어져 하후하박한 사례가 있으니 이해키 곤란하다.
- 14) 일반경비 지출에 있어서도 특히 인쇄비 같은 것은 거제 수의 계약을 하였는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법을 무시하여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
- 15)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실지 구입안한 것을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모경비 보충을 하였다하니 이에 대한 경비내역을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 16) 공사관계 계약에 있어서도 7,8건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한 것 같지만 들어놓고 응찰자가 없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는가 하면 모업자는 입찰 자격을 부여하여놓고 또 자격상실을 시켜 수의계약을 한 예가 있다.
- 17) 원천과세를 5일간내지 일주일간씩 유용한 것이 간혹 있는바 앞으로 시정하여주기 바란다.
- 18) 수도계 - 정응표의원이 발언한 것과 같이 수도시설의 편재를 시정하여주기 바란다.

19) 전도금 지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61, 62, 63조에 의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출하였으니 이의 한계를 석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본의원과 조양순의원이 서울에 출장하여 홈 관 보관상황을 조사하였던바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본의원의 감사결과 보고는 양심에 없는 적당한 보고를 하였음을 밝히며 자세한 것은 서면 혹은 차기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1) 도시계 - 도로점용을 상습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안은 없는가
- 2) 죽교 5구동의 해수욕장 대지 임차료의 차이가 극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매각처분하여 상수도 공사 경비에 충당시킬 의향은 없는가

◇조 양 순 의원

- 1) 시정계 - 좌담회 관계 회의록이 비치 안되고 있으니 차후시정하기 바란다.
- 2) 건설과 - 도로점용 징수에 공정을 기하기 바란다.
- 3) 서무계 - 출장복명의 필행을 요망한다.
- 4) 직원근태표 비치를 요망한다.
- 5) UN협회비의 징수이유는 무엇인가
- 6) 직원의 조퇴부정리가 안되어 있다.
- 7) 비품대장의 정리가 안되어 있으며 도서의 비치가 원만치 못하다.
- 8) 호병과 - 각동의 동적부 재조제의 용의는 없는가
- 9) 유달동, 서산동 - 발전적으로 잘되어 있었다

◇서 정 권 의원

- 1) 용당동 - 동직원의 사재로써 동의 환경정리를 실시하여 있고 기타 잘 되어 있었다.
- 2) 산정 1구동 - 제반사무집행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대단히 잘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수한 동직원은 본청과 인사교류를 시킬 용의는 없는가

제 2반 대표

◇김 상 균 의원 보고

- 1) 재무과 - 세입확보가 잘되어 있었다. 징수직원의 공금 유용여부를 내내적으로 조사하였든바 일건의 비위사실도 없었으며 직원간 인화도모도 잘되어 있었다.
- 2) 산업과 - 인화가 잘되고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 3) 호병과 - 양호하다. 기류부갱신의 필요를 느꼈다.
- 4) 청내각창고를 조사하였든바 물품의 보관 상황이 조홀하며 토목창고에 보관 되어있는 불필요한 철물등은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는가
- 5) 향동 시장 - 발전 도상에 있었다.
- 6) 연동 시장 - 차라리 폐쇄함이 가할 것 같다.
- 7) 죽교동 시장 - 여기 역시 폐쇄함이 좋을 것 같다.
- 8) 남교동 2호시장 - 발전도상에 있으나 천장에서 비가 세는 형편이다.
- 9) 남교동 1호시장 - 미개점포가 60여 개소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휴업자가 속출하리라 하는바 그 이유는 화재발생후로는 점포마다 칸을 막은것과 구채무에 쫓달리는 관계라한다.  
그리고 남교동 시장에 주임 1인, 사무원 1인, 노무원 1인으로 연동시장과 겸무시키고 있음은 너무 무리라 하겠으니 앞으로 획신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 10) 대성 1구, 대성 2구, 양동, 북교동, 무안동 대체로 양호하나 동정운영이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

- 김성균 의원 퇴장 재석 14명

◇의장 김 삼 성

- 오전 회의 휴회 선언하다. ( 하오 1시 현재 )

- 속개 선언하다. ( 하오 2시 현재 )

◇김 상 태 의원 보고

- 1) 수도 사용료 징수에 금년 7월말부터 그 율이 대단히 나쁘다. 특히 특권층의 협력이 부족한 듯 하였으며 직원의 태만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 탕옥에 다액의 미납이었음은 유감이다.
- 2) 수도수선비지출에 건설과와 재무과사이에 유기적인 연락을 요망한다.

- 3) 특히 교육청 체납분 30만환을 필두로 각관공서가 많이 밀렸었다.
- 4) 산업과 - 대여양곡 수납성적이 대단히 좋았으며 양곡 보관상황도 잘되어 있었다.
- 5) 남교동 2호시장은 청부수축한 업자는 앞으로 시청관계 공사에 참가시키지 말기를 요망한다.
- 6) 도살장의 시설이 많이 파괴되어있으니 조속 수축을 요망한다.
- 7) 대성 1구동 - 직원단속에 유의하기 바란다.
- 8) 대성 2구동 - 풍수해대책비를 적십자회비로 유용하였기 때문에 아직 미정리 되고 있다.
- 9) 양동 - 동사무소벽이 파괴되어있었다.
- 10) 북교동 - 천정보수를 시급히 요청한다.
- 11) 만호동 - 유리 35매가량이 필요하다.
- 12) 죽동 - 지붕 시구이(회칠 일본말)가 요청된다.
- 13) 병사계 - 잘되어 있었다.
- 14) 호적계 - 난필을 주의하라

◇김 창 희 의원 보고

- 1) 재무과 - 호별세부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일례를 들면 한 가정에 아들과 아버지가 벌고 음성 소득이 있는 가정에 비하여 하고방(상자)장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액부과된 점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이것은 동직원들과 몇몇 사람의 말만듣고 경솔히 판단한 소치라 하겠으며 자료조사를 할적에는 어느 정도 기간과 여유를 가지고 당할지며 출신 시 의원과 인근유지들의 여론을 두루살펴 부과하여 주기바란다.  
 요는 음성 세원포착에 노력하고 징수에 있어서도 권력층과 약자의 차이를 두지 말기 바란다.
- 2) 도살장입구에 인분 탱크를 만든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강 영 락 의원 보고

- 1) 제2반의 소관 상황은 아니였으나 뜻한바있어 감사초일 청원들의 출근 상황을 조사하였든바 지참자가 무려 15, 6명에 달하였다. 앞으로 일층유의 하기 바란다.
- 2) 수도료징수에 있어서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고 징수만을 재무과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수도대장의 경신에 노력하기를 요망한다.

- 3) 유달산의 녹화문제가 시급하다.
- 4) 연동시장과 죽교동시장은 차라리 매각 처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면에 전용함이 어떠한가 공동목욕탕의 설치라든가 시영버스의 설치 같은 것이 이상적이라고 느껴졌다.
- 5) 향동 시장 - 얼핏보면 번창한 것 같아 보이나 그 이면은 그것이 아니다 공점포가 11개소나 되며 쇠퇴일로에 있다. 원인은 도로변에 잡상에 대한 포탈료징수이며 이 징수에 그 근본취지를 몰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로면은 노점일색인 것이다. 그리고 징수원에 전과자를 채용하여 흡사 뒷거리의 왕자들이 준동하여 지배하고 있는 격이다.
- 6) 남교동 2호 시장 뒷곡목의 포장이 시급하다.
- 7) 관인의 관수에 특단유의하기 바라며 호병과에 관인 분치를 하던지 불연이면 호병과 청사를 본관의 타과와 교체하든지 하기 바란다.
- 8) 직원의 중식 지참을 려행하기 바란다.
- 9) 의회 대내적인 말이나 금반에 이, 조, 양 의원이 흡관 보관상황조사차 서울에 출장한 사실이 있는바 감사할 때마다 혹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용무로 서울에 출장한다는 것은 여비의 낭비와 중앙에 인상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여 참고로 발언하는 바이다.

제 3반대표

◇김 경 인 의원 보고

- 교육위원회 관계

세입면

- 1) 재산수입이 전연없다. 비번한 직원의 이동으로 관계법령의 개정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겠으나 이러한 면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주기 바란다.
- 2) 재산대장의 정비를 촉구한다.
- 3) 재산의 활용에 연구와 검토를 요망한다. 지금은 휴면상태에 있는 것이다.
- 4) 과년도 수입에 일층 치중하여주기 바란다.
- 5) 교육세징수액증 37만 8천 6백환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이의 전말을 밝혀주기 바란다.



### 세출면

- 1) 교육청의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하건데 아직도 무모,무계획성의 탈피를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주먹구구식을 버리기 바란다.
- 2) 교직원 보건수당을 6월분부터 미불하고 있는데 오는 결산기까지는 완전 정산하여주기 바란다.
- 3) 교직원 여비미불분에 대하여도 금월말까지 지급하기 바란다.
- 4) 국민학교용 제반 자재구입에 있어서도 절차상 모순이 개재되어 있었다. 자재구입 및 물품서택은 교육장에게 맡기고 대금 지출만을 사무장이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 5) 각기관에 찬조금 지출등에 있어서는 영수증도 없이 교육감의 지출확인증으로 대행하고 있었으나 이는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 6) 경찰서 경비 일부 찬조라 하여 지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체육회 혹은 웅변대회를 한다하여 그 경비를 찬조할 수는 있어도 여사한 명목으로는 부당지출인 것이니 이는 반환조치를 하여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양교 찬조금등을 심계원에서 부당 지출이라고 지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 7) 과목유용을 비공식으로 한 것이 있는데 특별판공비의 성질인 축하 광고료를 교비의 신문구독료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이 아니나
- 8) 징세비 보상금 지출에 있어서 경찰서, 소방서, 유족회등에 찬조금으로 다액 지출 하였는데 이 역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아져 시정을 바라는 바이다.
- 9) 각 국민학교 수용비를 사전에 그 예산을 배정하여 매월 통지하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 10) 특별 판공비의 지출의 너무 과다하니 이의 억제책을 강구하라
- 11) 지출증빙서에는 완전 지출형식이 취하여져 있는데 사실상 당해업자는 안 받았다는 건이 있다. 이는 토건업자 구자원씨의 경우이니 이를 하처에 유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 12) 12월말 현재 수지내역 현황을 여좌보고하였음. - 내용생략 ( 초안 참조 )  
결국 1천 6백여만원이 결손상태이고 흥미가 있는 것은 종전의 부채 현사무장은 전연 무관한 태도를 취하는바 다행히 채권자들이 이를 묵인한다면 별 문제이나 교육청상대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여하히 수

습할 것인지 위험천만의 처사이니 충분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이다.

#### 사회과 소관

- 1) 오물흡취수입의 미수입분은 시당국에서 관대한 처리가 긴요하다고 보아진다.
- 2) 도서관 이용료가 1천6백환 밖에 안되는데 제2국민을 양성한다는 견지에서 명실상부한 충실한 도서관을 만들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조흥은행 2층이라도 빌려 이용하면 좋으리라고 보아진다.
- 3) 극빈자의 구로방침을 변경하여 재무과에 비치된 호별세 면제대장을 이용하여 중점 배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공익전당포 운영면에 자금이 부족하여 그 기능을 완전 발휘 못하니 이의 확장책을 연구하기 바란다.
- 5) 위생허가 사무인 관계업자는 철저한 단속을 요망한다.
- 6) 시립병원 운영에 있어서 종전에는 그 수입의 절반을 의사의 생활보장금에 충당하여 왔으나 10월분부터 일괄 수입하게 되는바 그 수입이 개인병원의 수입보다도 근소하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진료비정리가 불충분하며 서무과에서 임의로 여사무원 1인을 채용하고 있음은 인사취급상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 7) 대성 2구동은 풍수해대책금 5만여환을 적십자회비에 유용하여 미정리 되고 있으니 주무과에서는 특단의 주의를 경주하여주기 바란다.
- 8) 군경 원호금 변상 문제에 있어서 횡령 착복액 69만환중 52만환의 반환을 하고 17만환은 미정리인데 이를 시장님이 직접 주동이 되어 금일말까지 정리 되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 ◇박 두 순 직원 보고

- 1) 위생비를 전혀 집행못한 것은 유감이고
- 2) 무상으로 교과서를 배부하는것도 적기에 배부도록 요망하며 교육장과도 유기적인 연락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 3) 공민학교비도 서부교에만 4만환이 지출되었고 기타교에는 지출안되어 있었다.
- 4) 교육청의 공기를 살피건데 완전히 인화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사무장이 주동이 되어 노력하여주기 바라며 모교 교장과 트라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5) 온금동, 죽교 5구동, 영해동, 동명동을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김 상 대 의원 보고

- 1) 교육위원회 세입문제에 있어서 교육세 금년도 제 1기분의 징수상황을 내사하였든바 6개동은 아직 미조사하였으나 무려 36만환가량이 행방불명 되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2) 죽교 1구동 - 양호하다.

3) 죽교 2구동 - 전년보다는 향상되었다고 보나 미비가 많다.

4) 죽교 3구동 - 문서보존대장이 없고 공채성적이 부진이다.

5) 죽교 4구동 - 동장을 못만났으며 엉망진창이다. 시정계는 특단유의 하기 바란다.

6) 대성병원 - 대단히 잘되었다.

◇김 일 섭 의원

-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미 통과 되었으나 본 의원은 특별 판공비의 18만환 개상한 것을 반대한다.

◎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 해산물상대표 손길동 의

◇서기 박 찬 대

- 낭독하다.

◇의장 김 삼 성

- 상임위원회 회부를 선언하다.

- 금차 회기의 의사일정인 시정감사결과 전말보고를 오는 29일로 되어있으나 당일은 이충무공 전몰 6주 갑기일로써 제주인 시장님이 부재중일 것이니 그 일정을 30일로 연기함이 어떠한가 전원 이의 없음

- 폐의 선언하다.

( 하오 4시 50분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2월 28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91회 제 4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2월 30일 상오 10시 1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2월 30일 하오 5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김남진, 천철수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내무위원회 종합 심의 보고

#### ◆ 부의안건

- 전차회의시와 동일함.

### 8. 토의사항

#### ◇정 응 표 의원

- 내무위원회의 종합심의가 이직 미진 되었으니 본 회의를 잠시동안 휴회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의장 김 삼 성

- 회의중지 선언하다. ( 상오 10시 15분 )

- 속개를 선언하다. ( 상오 11시 정각 )

◎ 내무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박 두 순 의원

-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는 래 1월중으로 내항준설 동명동 어판장 부근도로 포장과 일방도로 확장등의 추경예산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원안 통과를 보았으며 기타 각 특별회계 예산 등도 원안통과를 보았으나 동정 특별회계는 세입 100/100을 통용하여 세출을 응분 편성하도록 하여 일응 원안 통과를 보았습니다. 진정서는 집행부에 일임토록 결의를 보았으며 위원회 조 례 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일응 보류하였습 니다.

◇강 영 락 의원

- 민원서류인 진정서를 무조건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것이 모순이며 여하한 처결방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박 두 순 의원

- 해 진정서는 예산과 수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임한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내무위원회 회의상황 보충설명 내용 생략함.

◇김 상 태 의원

- 문사 산업 합동위원회를 개최키 위하여 본 회의를 일단 휴회할 것을 동 의하다.

◇김 성 균 의원

- 찬성 발언하다.

◇김 상 대 의원

- 문사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
- 탄원인의 요청은 17만환을 감액하여 달라는 것이나 7만환만 감액하여주도록 행정부에 건의하도록 가결을 보았습니다.

◇김 성 균 의원

- 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다는 것은 언어도 단이다

◇강 영 락 의원

- 찬성 발언하다.

◇의장 김 삼 성

- 오전 회의 휴회를 선언하다.

- 속개를 선언하다.

( 하오 1시 30분 )

◇박 두 순 의원

- 오전 중에 보고한바있는 위원회 조례개정 수정안은 아직 초안이 안되어서 김성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을 그대로 무수정 통과시켰습니다.

◎ 제 11회시정감사 처리 전말보고

◇하 시장

- 시행정의 쇄신 진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일간에 공한 장기간 세밀한 검토를 하여주신 의원 각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전말 답변은 총무, 산업, 사회, 재무, 건설, 호병과의 순으로 하여 드리겠습니다.

◇장 총무과장 답변

- 정응표 의원의

- 1) 직원자숙 문제 - 처우개선이 안되더라도 공무원의 본분을 조수(지조를 지

킴)하여야할 것인데 이러한 지적을 받아 죄송하오나 차후는 가일층 직책 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 2) 관공비 과다지출문제 - 항상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고심하고 있으나 당시는 항도이기 때문에 외지로부터 시찰단 혹은 제주행의 빈객등이 다수 심방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접대비로써 5백여만원 소비되었으나 경주시 전주시의 예를 보더라도 당시보다 많이 지출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 3) 여비과다 지출 및 2중 날인 문제 -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억제를 할대로 하고 있으나 용무의 성질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고 서울 출장은 1회에 전도금 2만원천환을 수령하면 경우에 따라 실비에 부족되는 형편이 생김으로 부득히 1인식을 증가하는 수가 있었던 것이며 결코 여비로서 개인의 사복을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근부 정리에 있어서 1주일간의 명령을 받고도 5일만에 귀청하는 경우라든가의 이중날인일 것이나 차후로는 각별 주의하겠습니다.

- 4) 영수인 없는 증빙서 문제 - 이는 호적, 기류 협조금 납부금으로서 법원의 수령 책임자가 출장중이여서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여 편의를 도모하여 준 것입니다.
- 5) 10월분이강 증빙서 편철불능문제 : 심계감사 관계로 지연 되었습니다.
- 6) 동일한 물품의 일개월 수신회 구입 및 가격차이문제 예산 집행자로서 일시구입을 피하고 집행상 균형과 절약의 견지에서 여러차례 나누어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가격의 차이는 품질의 호,불호에 의한것일 것입니다.
- 7) 신문사에 대한 축의금 지출문제 - 당연한 지적입니다. 금반의 감사를 통하여 차후는 극력 억제하겠으며 부정을 은폐하는 수단 같은 것은 개재 안되었습니다.
- 8) 관인 사용부 비치문제 - 본건 비치 목적은 민원서류에 부수될 것으로 믿어져 일반 공문서와 고지서 같은 것은 제외하고 관인 사용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정 권 의원

- 1) 동직원 신원 보증서 미비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더욱 관심을 경주하여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 2) 동특 경리 문제 - 예산 잔액으로서 동(청)사수리 및 동장 위로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시유재산 매각대 징수문제 - 년도 폐쇄기까지는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국공채의 유용 문제 - 차후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 5) 우표수불대장 정비문제 - 앞으로 주의하겠으며 추완 하겠습니다.
- 6) 숙직료 미불문제 - 오늘 현재로 완전히 지불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7) 임시직원 전배문제 - 재무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직원으로 대체한 관계 이였으나 앞으로 차차 시정하겠습니다.
- 8) 감원 직원의 정실 개재문제 - 징계대상이라함은 감봉이상을 말한 것으로서 이번의 감원 대상자에 대한 정실 개재란 있을수 없는 말입니다.
- 9) 여비 판공비 과다지출문제는 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 10) 복명서 문제 - 앞으로는 필행(필히실행)하겠습니다.
- 11) 관내여비의 미불과 여비지출의 선후 문제 - 관외여비는 그 출장 도수가 예정보다 많았으며 관내는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관외여비로 유용하게 된 것이며 여비지출에 선후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보조비 직원은 여비보조영달을 기다려 지출하는 관계가 있기 까닭이나 현재는 거이 정리 되었습니다.
- 12) 공사계약의 수의계약문제 - 주로 인쇄비일 것인데 주무과의 지급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부득히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 13) 청부업자 실격 문제는 건설법개정에 따르는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 14) 소모품 및 비품대장 정비문제는 시급 추완하겠습니다.
- 15) 전도금지출의 도지사 승인 문제 - 심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바 없으며 도와의 조회에도 무관하다는 언질을 받았으나 앞으로 연구하여 해당조례라도 만들어 명문화시키겠습니다.
- 16) 원천과세 유용문제 -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명 남 철 의원

- 해수욕장 부지관계 - 이를 매각보류한 것은 하시장 도미시에 염(소금)수납장으로 사용할려고 하였기 때문이었고

임차료의 1환과 3환의 차이 문제는 강씨 분이 경작지로 되었기 때문에 3환으로 한 것이고 석(돌)담 관계는 차후 조사하겠으며 부지매각 문제는 조속 시장님에게 품신하여 의결을 거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 조양순 의원의

- 1) 각종 좌담회 회의록 비치문제는 앞으로는 정비하여두겠습니다.
- 2) 직원 숙소부도 조속 추완하겠습니다.
- 3) 직원 근태부도 신년도부터 비치하겠습니다.
- 4) UN협회비는 각 동분은 중도에 중지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중단하고 각 직장분을 종합하여 납부하고 종결했습니다.
- 5) 조퇴부 비치문제 - 앞으로는 관내출장직원에게도 일응귀청토록 하겠으며 신년도부터는 조퇴부정리도 하겠습니다.
- 6) 비품대장도 앞으로는 폐기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 정비에 특단 노력하겠습니다.
- 7) 도서대장도 차후 특단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8) 각 동의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여러의원이 지적하신 동은 가일층 엄독하여 유루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영락 의원의

중식지참문제는 시년도부터 내무직원에 한하여 려행 시키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련수 답변

- 김성균 의원의

- 1) 남교동 1호시장 미개점포문제 - 복구에 시급성을 절감하는 바이나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로써 이 문제가 타개되는대로 원상복구에 주력코자 합니다.
- 2) 남교동 2호시장 지붕과 콘크리트 개수 문제 -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3) 남교시장 직원 증치문제 - 재원이 허용 하는대로 조치하려 합니다.

김상태 의원의

- 1) 남교동 2호시장 청부업자 및 검사원 제재방법 - 본 건 청부업자는 앞으로 시공사에는 제외시키겠으며 이의 검사직원은 앞으로 극력 주의토록 단속 하였습니다.
- 2) 도살장 수리 문제 - 신년도 예산에 10만환을 계상하여 두었으나 부족액은 타비목에서 염출 조치하겠습니다.

- 김창희 의원의

도살장 부근의 인분탱크와 울타리 보수문제 - 인분탱크는 도비보조로서 신설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됨으로 신년도부터는 사용중지 하겠습니다.

- 강영락 의원의

- 1) 죽교,연동시장의 폐쇄 문제 - 동감입니다 만은 줄지에 곤란한 문제이니 여러 의원님들과의 연구자료로써 보류하여 두겠습니다.
- 2) 향동시장 포탈료 문제 - 신년도부터는 그 징수를 중지하겠습니다.

◇박 사회과장 답변

- 김경인 의원의

- 1) 구호대상자 책정문제 -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통계를 감안하여 책정하여 왔었으나 차후도 김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호별세 비부과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2) 도서관 시설확장 문제 - 자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급적 현금의 상무회를 타처로 이전토록 하여 그 보수를 단행하고 명실공한 시민의 문화시설로 만들려 하겠습니다.
- 3) 공익전당포 운영문제 - 현금 지방의 기채 케이스가 없다고 하니 그 자금증자에 난색인 것입니다.
- 4) 대성 2구동의 풍수해 대책금 유용문제 - 신년도에는 완전 정리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박 재무과장 답변

- 조양순 의원의 도로점용료 징수부진 문제 - 92년 1월말까지는 완정 하겠습니다.

- 김상태 의원의

- 1) 취득세 수시분은 완정하였습니다.
- 2) 수도사용료 징수미진 문제 - 앞으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창희 의원의

- 1) 음성소득포착문제는 고리대업자등 조사에는 애로가 많으나 앞으로 이 방면을 최대한의 관심을 경주하여 철저히 하겠습니다.
- 2) 징수에 정실개재문제 - 이것은 납기전에는 소액을 치중하고 납기후에 고액자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 강영락 의원의

수도사용료 조정의 건설과 이관 문제 - 건설과장과 타협하여 선처하겠습니다.

#### ◇이 건설 과장 답변

- 조양순 의원의 수도용품 수불대장 정리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명남철 의원의 도로점용료 문제는 명년 2월 만기와 동시 취소하겠다.

- 김성균 의원의 토목창고 보관의 불용품 매각 문제 - 조속상사에 품신하여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강영락 의원의

1) 남교동 시장 골목 도로포장 문제 - 4백50만환 가량이 필요하여 당분간 곤란한 문제입니다.

2) 2호시장 콘크리트 문제는 그 당시 미완 된 곳을 상인들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되었으나 당해업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정응균 의원의

수도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나 아부를 한 것이 아니라 13만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이 말씀하면 그 에 순종하였을 따름이고 죽교 2,3구를 들어 인 구비례를 말씀하시나 기술적인 문제로 본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곤란한 것입니다.

#### ◇정 호병 과장 답변

- 강영락 의원의 호병과의 본관이전문제 - 실은 전반부터 그것을 구상하여 보았으나 본관으로 옮기게 되면 호적기류부의 보관창고가 없어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 조양순, 김성균 의원의 기류부 조제 문제 -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두었습니다.

- 김상태 의원의 호적계의 난서 문제 - 앞으로는 특단 유의하겠습니다.

◇박 시립병원장 답변

- 1) 개업의 보다 수입이 적다는 문제 - 그 이유는 입원환자가 극히 근소하고 병원의 이용자가 세민층에 국한 되어있어 고가약 사용자가 적기 때문이나 앞으로 입원실이 신축되면 관촬을 것입니다.

- 2) 서무과에 여직원 배치문제 - 환자들의 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 비공식으로 채용하였으나 즉각 시정 하겠습니다.

◇박 교육감 답변

- 김경인 의원의

1) 재산수입금 무, 재산대장정비, 재산활용 문제는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2) 과년도 수입부진 문제 - 그 동안 사무장의 교체로 인하여 불여의 하였으나 연도 폐쇄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3) 37만 5천환의 행방불명 문제 - 감독 불충분에 기인한 것으로 믿어져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며 앞으로 그 진상을 조사하여 변상조치 하겠습니다.

4) 실행 예산 편성문제 - 곧 실천하겠습니다.

5) 교직원 여비 미불문제 - 기히 지출하였습니다.

6) 교육장과 사무적인 연락관계 -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7) 경찰서 찬조금 문제 그 과목에서 찬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바 앞으로 가일층 연구하여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금 지출은 도에서 지시한 과목해소에 의하여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8) 각 국민학교에 예산통지 문제 - 매월 현금 영달을 하겠습니다.

9) 구자원씨 관계 - 정식으로 전액 지불한 것이나 아마도 계원과 사조인 것 같습니다.

- 박두순 의원의

- 1) 위생비 문제 -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2) 인화도모 문제 - 현금 일심동체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장의 답변

- 김경인 의원의

- 1) 12월중 현황으로 경상비 유용 문제 -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자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2) 각부채조는 후임자로서 전임자의 채무관계를 모른다고 관심을 아니 갖는다는 것은 도의적면으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차, 정, 과장 등의 인계서에 나타난 1천3백 만환의 채무를 검토한 바도 있으나 직원의 봉급과 교비지출도 못하는 판국에 재정법에 조감하여 불비한 서류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안을 하여 결재를 득하여 두어야만 되는 것이고 계원들의 음성부채운운은 아직까지 그러한 말을 들어본 일 조차 없습니다.

- 김상태, 김경인 의원이 질문하신

징세비 직원의 부정 문제 - 금명간 엄정한 조사를 취하여 인사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정응표 의원 질문

- 1) 현금의 시정 운영면을 검토하건데 시장으로부터 급사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것으로만 알았더니 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다. 저반에 시청간부 이동설이 퍼져 모모 클럽이 만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여주기 바란다.
- 2) 건설과장의 답변에 수도신설에 있어서 의원들의 말을 듣고 하였다고 하나 의원들에게 하후하박을 한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죽교동의 수도시설은 본관이 없다고 운운이나 죽교동 일대는 급수신간이 되면 땅이 짹짹 하여 보행할수 없는 정도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을 자치행정으로 옮겨진 오늘날까지 답습한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니 앞으로는 가일층 공정을 기하여주기 바란다.
- 3) 각 동에서 미진되고 있는 공채소화는 각 동에서는 소화시킬라고 생각

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차제에 각 동분을 회수하여 첨가소화의 방법 등을 강구함이 좋을 것 같다.

- 4) 공사의 검사부철저 문제인데 이제부터는 주로 과장이 직접 대행함이 좋을 것 같다.
- 5) 용당도선장의 모타선 단속책은 없는가
- 6) 개정 자치법 발표로 말미암아 23개동장이 자연 해직 되었는데 그 임명 구상은 여하
- 7) 죽교동 압해도선장부근의 인분 탱크장 「돌」을 매각처분함이 약하
- 8) 전차 회의시 본 의원이 발언한 유명무실한 보도기관에 참조하였다는 말을 역이용하였는데 그 이유여하
- 9) 공무원 처우 개선을 단행한 요즘 시청직원들은 근면한 태도로 집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치 허영을 일삼는 예가 있는데 이의 단속을 철저히 요망한다.

#### ◇김 상 태 의원 질문

- 1) 수도수리공사후의 수입은 여하
- 2) 저반 시(립)병원에서 목격한 바인데 모 간호원이 1천8백 환의 치료비를 받아서 2백환은 서무과에 납부하고 1천 환과 6백 환은 각각 양쪽 포켓에 나누어 담은 것을 보았는데 그 진상 여하

#### ◇김 경 인 의원의 질문

- 1) 경찰서에 찬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종의 행사에 대한 경비 찬조는 가능하나 막연한 경찰서 경비찬조는 있을수 없는 것이다.
- 2) 수선 및 수수료에서 발전 축하광고료를 지출한 것도 부당하다.
- 3) 월급과 교비를 지급 못하는 관국에 채무정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나 어떠한 사람이 자기물건을 주고 돈 안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채권자 측과 어떠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4) 음성부채 문제도 검토하여 정당하게 써진 것이라면 반제(빌려쓴 돈을 갚는 것)하여야 될 것 아닌가

#### ◇의장 김 삼 성

- 법정시간이 되었음으로 무제한 시간 연장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4시 현재 )

◇김 성 균 의원 질문

- 목포시의 인구수가 공부상 10만8천밖에 안되니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이며 5대민의원 선출 시에는 3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내야 할 것이다. 총무과장은 직원을 총동원하여서라도 정확한 인구파악에 노력하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찬성 발언하다.

◇김 창 희 의원

- 교육청사무장은 교육감을 잘 보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견 명령계통이 안서있는 것 같으니 차후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질문

- 1) 각 과장의 답변을 청취하건데 시종 유아무야의 답변이니 앞으로는 실천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기 바란다.
- 2) 성인 교육의 성과는 어느정도 인가
- 3) 각 학교의 부채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4) 해수욕장 부지의 임차료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을 시정 할 수 없는가

◇김 상 대 의원 질문

- 1) 신설수도에 관여한 시의원의 명단을 발표하여주기 바란다.
- 2) 종래의 예를 보아 인구조사의 방법이 졸렬한 감이 불무하니 동에만 일임 할 것 아니라 본청에서 주동이되고 소방대원등을 동원시켜 실시함이 약하

◇이 정 권 의원

- 1) 전차 회의에서 본 의원의 보고 중 양심에 없는 적당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인데 신문지상에 발표 되어 미안하게 되었다.
- 2) 강영락 의원이 서울 출장 건에 언급하여 흥관회사 출장은 삼가라고 하였는데 실은 타용무도 있었던 것이다.



- 3) 여비지출로써 제경비 보충건수가 7,8월분 총 계를 보면 1개월 10만원정도가 된다. 너무 무리하매 의아 아니 할수 없다
- 4) 전도금 지출문제에 대하여 도당국에 조복하였는다는 답변을 하나 자치법에 명문화하여 규정된 것을 적용안시키고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 5) 군경 원호회 관계의 답변이없는 것은 여하
- 6) 항동시장 포탈료는 1일평균 2천 환씩은 수입되니 일년이면 72만 환이 되는데 36만 환 밖에 계상안되었음은 여하한 이유인가
- 7) 시립병원 진찰에 있어 유상이 6,600명 무상이 3,300명으로서 약5할 정도가 무상인데 어떠한 사람을 무료로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김 경 인 의원

- 1) 교육부 숙직료문제는 연도 말까지 지불가능 유무를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 2) 교육부 음성부채관계는 갱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김 일 섭 의원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일 청취키로하여 금일 회의의 종결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폐의 선언하다.

( 하오 5시 50분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12월 31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김 경 인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91회 제 5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2월 31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2월 31일 하오 5시 4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천철수, 박두순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제 4차 회의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부 답변

#### ◆ 부의안건

- 전차 회의시와 동일함

### 8. 토의사항

#### ◎ 제 4차 회의 보충 질문에 대한 행정부 답변

- 1) 간부간 융화문제 - 비단 간부뿐이 아니라 전 직원은 물론 의결부에 이르기까지의 융화책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후하박을 하여본 일이 없다.
- 2) 공채소화문제 - 신년도에는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겠다.

- 3) 제공사의 검사 문제 - 차후부터는 건설과장을 참석시키겠다.
- 4) 동장임명 문제 - 신년초초 임명시키겠습니다.
- 5) 압해도선장부근 인분탱크 경치돌문제 급속 조치하겠습니다.
- 6) 호병과 청사이전 문제 - 진즉부터 구상한바 있었으나 본관으로 옮기게 되면 업무대를 만들면 협소할 뿐아니라 호적 기류부 보관창고가 없다. 석조 창고는 6과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의 단행을 못하고 있다.
- 7) 직원의 허염심과 사치심 관계 - 사실이라면 유감된 일이나 각직원들이 월부로 양복을 신조한다는 말을 들었다.
- 8) 전차 행한 각 과장의 답변은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명령 하였습니다.
- 9) 신년도부터의 시외출장은 전례를 안밟도록 하겠습니다.
- 10) 전도급 지출은 차후부터 안 내겠습니다.

#### ◇장 총무과장 답변

- 정응표 의원이 지적하신 유명무실의 보도기관에 대한 축하광고료를 지출한다는 발언을 역이용 하였다는 말은 허무한 말씀입니다.

- 명남철의원이 말씀하신 해수욕장부지 임차료문제는 차후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대 미납분은 연도 폐쇄기내에는 완전정리할 계획입니다.

- 김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인구조사에 있어서는 전 청원을 총동원하여 세밀히 조사하도록 수배하고 있습니다.

#### - 이정권의원의

- 1) 인쇄물 수의 계약 문제 - 신년도부터는 소정규정대로 실천 하겠습니다.
- 2) 가축시장 수의계약 문제 - 당초 5인의 응찰자 중 문씨는 3년미만이라 하여 취소당하고 4인은 재입찰에 기권하여 부득히 수의 계약으로 한것입니다.

#### ◇김 산업과장 답변

- 이정권 의원이 말씀하신 항동 시장포탈료 징수문제 수입액이 너무 근소

하다 지적하시나 감독불충분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금일로서 해제되는 것이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설과장 답변

- 정응표 의원 용당도선장의 모-다선 취체 문제 - 사직당국에 의뢰하고 있으나 여의대로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 시립병원장 답변

- 김상태 의원의

- 1) 간호원에 대한 1,600환 문제 - 추측컨데 200환 자리의 처방에 1,800환의 약품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무료진료 문제 - 시에서 발급한 무료진료권 지참자는 대개 고가약을 사용하게 될층이며 구호권에 의하지 않고 치료시킨 사람은 인간으로서 피치 못할 사정이 개재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의하여 시에서 발급한 진료권에만 의지하겠습니다.

◇박 사회과장 답변

- 방금 병원장으로부터 증언한바와 같이 시에서 발급한 진료권 소지자는 주로 난치의 고질환자로서 고가 약 해당자였습니다. 차후로는 병원측과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진료권 소지자에 한하여 응진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일 섭 의원

- 토론 종결 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부의안건 상정 선언하다.

- 1)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단기 4292년도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단기 4292년도 동정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단기 4292년도 도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단기 4292년도 공익전당포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단기 4292년도 국민주택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7) 단기 4292년도 재건축주택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8)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일시차입 안

◇김 창 희 의원

- 전차 8건 중 일반회계와 동정특별회계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바와 같이 명년도 1월 2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기타 6건과 공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집행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이 있었다.

◇김 상 대 의원

- 찬성 발언하다.

◇명 남 철 의원

- 원안통과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일반회계 문사위와 산업위의 소관이 아닌 과목중 추경예산제안시 참고에 자코자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여 두는 바이다. 내용생략함.

◇강 영 락 의원

- 명의원의 발언은 원안통과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독회를 통하여 심의하자는 개의를 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규칙이다.

◇이 정 권 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시장님이 확약한 바있는 3공사중 내항준설 공사비로 130만환을 계상하기로 설계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소액가지고는 대규모의 내항 준설공사는 완수할수 없을 것이니 결국 내무위를 농락한 소치라고 본다. 제독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개의하다.

◇김 경 인 의원

- 찬성 발언

대체 일반회계의 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2할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토목비에 계상한 액수는 일체삭감하지 말고 일반수용비에서 1천만원 가량을 삭감하여 내무위석상에서 시장이 확약한 1) 내항 준설 2) 일방도로 확장 3) 동명동 도로포장과 초단파기 신설도로 공사까지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제출할 것으로 알았는데 전문한 바에 의하면 내항 준설공사를 130만원 정도로 설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난한 문제이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답이 있지 않으면 본 회의에서 즉각 축조 심의하여 적의 삭감토록 하자는데 찬성하는 바이다.

- 이에 대한 조양순, 김상대 의원의 찬반 발언이 있었음 내용생략함.

#### ◇의장 김 삼 성

-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하여 오전회의를 휴회 선언 하다.

- 속개 선언하다.

( 하오 2시 40분 )

#### ◇장 건 식 총무과장

- 세출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삭감하여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비 - 350만원 유도각 신축관계 170만원

연료비 - 60만원 시세일람 30만원

사회사업비 - 50만원 교환대 10만원

훈련비 - 10만원 징세비 50만원

반장대회 - 10만원 가축시장비 35만원

농촌개혁비 - 75만원 계 840만원

- 이러한 범위내에서 삭감하여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경정 예산을 편성할 가구상하는 것입니다.

#### ◇정 응 표 의원

- 작일 내무위에서 시장이 증언하시기를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할 대로 삭감

하여 3개공사만큼은 실현되도록 하겠으나 초단과관계는 토목비 예산의 완급을 따져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로서 초단과 시설까지를 할 수 있는가 여부를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농촌 개혁비에서 75만 환을 감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바이며 가축시장비 보건사회비 같은 것도 사업비라고 보아져 반대하는 바이다.

◇김 성 균 의원

- 장총무과장의 모모과목을 삭감하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의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아니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원안통과 동의자와 찬성자를 모독하는 소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아니한다.

◇김 상 대 의원

-내향 준설공사 같은 것은 국비부담의 성질이겠기로 신년초초부터 관계 요로에 진정하여 보조를 받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지며 방금의 총무과장 답변은 궁여지책인 답변이라고 보아진다. 가부표결에 들어가도록 요망한다.

◇하 시장

- 일반토목비 예산에서는 전혀 손을 안eof 계획이나 초단과시설에 전액을 계상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향준설은 우선 진개만 정리하자라는 것이고 총무과장의 답변도 자신있는 태도의 말이 아닙니다.

◇명 남 철 의원

- 사회 사업비에서 50만환을 삭감한다는 것도 시의 존립목적을 무시한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김 경 인 의원

- 시세일람 편찬비에서 30만환 삭감한다는 것도 반대하는 것이다. 가능한 수용비에서 손을 대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원안의 통과를 동의한 자로서 시장님은 이 중대한 답변을 과장으로 하여 금 대행시켜 이로 인하여 옥신각신 의원들의 감정을 조발시켰다는 것은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동의를 철회하는 바이다.

◇장 총무과장

- 본인이 지혜없는 답변을 하였음을 뉘우친다. 1개월 이내에 의원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석상에서 삭감의 범위를 확정된 다음 본 회의에 정식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 권 의원

- 그렇다면 본 의원의 개의를 철회시키겠다.

◇김 상 대 의원

- 본 청 관계부의안건 8항목을 일괄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으로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인분 자유흡취판매 대금 감액 탄원서 처리의 건

◇의장 김 삼 성

- 상정 선언하다.

◇김 상 대 의원

- 본 탄원서를 검토하고 그 진상을 조사한바 탄원사실과 같이 이유가 개재되었다고 인정되니 본회의의 결의로써 집행부에 17만 환의 신청중 7만 환을 감액하여 주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김 성 균 의원

-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에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교위관계질의에 대한 답변

◇이 서무과장 답변

- 김창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간부융화 문제는 사무적으로 이 이상 더 융화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의원의

- 1) 채무확정액의 상환 방도에 대하여는 현금 영선재원은 3백만원 가량 있으나 이를 경상비로 유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 2) 교직원 보건 수당지급은 본 청 직원의 봉급 지불등 여하히 하여야 좋을지 배려중에 있습니다.
- 3) 음성부채문제는 별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4) 사친회 부채관계는 앞으로 연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사무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기 바란다.

- 1) 교직원 보건수당은 6월분부터 미지불액을 하시까지 지급하겠다는가
- 2) 개인들의 부채정리와 숙직료등도 어느때까지 지급하겠다는가 확실하여주기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 1) 이사무장은 신년도에 신설 국민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나 교육감은 모집할 수 있다고 2울배반격의 언질을 주니 하자를 신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하히 질 것인가
- 2) 음성부채의 정리방법은 여하히 할 것인가 법령위배인가 재원부족인가
- 3)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부진원인은 나변에 있으며 어느 선까지 징수가능한가

◇강 영 락 의원

- 각 의원의 질문이 신년도 예산안과 대부분 관련된 문제이니 본건을 일응 의제에 상정하여 놓고 대체토론점 질의 응답을 할 것을 동의하다.

◇이 정 권 의원

- 반대한다. 질의는 질의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사무장 답변

- 자체수입에서 지불하여야할 보건 수당도 소비해버려서 미안하며 앞으로 노력하여 숙직료, 보건수당등은 연도말까지 우선적으로 지불하겠다.
- 음성부채정리 방법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밝히지 않으나 재정법상으로 제한된 지출비의 입장에서 본인이 무어라 확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 권 의원

- 음성 부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성부채중 지출할 수 없는 부분만은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이 사무장

- 집행부 측에 일임하여주기 바랍니다.

◇이 정 권 의원

- 정식으로 인수받은 부분은 하시까지 상환하겠는가

◇이 사무장

- 약 8백 만환이 되나 재정법상 저축되는 현금이 없는 지출확답이 곤란합니다.

◎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김 삼 성

- 상정을 선언하다.

◇김 경 인 의원

- 세입의 세율에 있어서 현년도는 1천백만 환인데 신년도는 3천3백 만환이 부과되는데 과연 시민의 부담력이 그렇게 향상되었다고 보는가
- 제안설명에서 도 배시액을 빙자하였으나 도의 배시라면 무조건 감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제 2기분호별세와 대조 설명하다. 내용 생략한다.

◇이 정 권 의원

- 찬성 발언하다.

◇이 사무장

- 과세상 세율은 비밀을 피하는 방향으로 답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호별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정 권 의원

-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적에 위생비 및 급식비의 집행은 여하히 할 것인가

◇김 경 인 의원

- 집행부는 예산편성상 기술을 발휘토록 노력하라 과거 교육세 2천환 부담자가 3천5백 환이나 부담되는 모순이 없다면 통과시킬 용의도 있다.

◇이 사무장

- 본 예산이 통과된다면 교비와 영선비 집행에 치중하겠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신설 국민학교 조속신축을 요망하며 본 건 원안 통과할 것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이 정 권 의원

-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수입되는 율에 의하여 지출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동의집에 첨가하여 동의집수락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강 영 락 의원

- 교육위원회 관계 음성부채관계를 해결도 안짓고 막연히 넘긴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나 본 의회에서 피해 대상자의 폐단을 가리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조사할 것을 동의하며 조사요령은 그 음성부채가 개인조인가 공적인가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강의원의 동의취지에는 찬동하는 바이나 우리의회에서 선출한 10인의 교육위원이 있지 않으나 우리 의회에서 직접조사에 착수 할 것이 아니라 인사로라도 교육위원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로 동의집에서 양해 하여준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정 권 의원

- 정 의원의 의사에 찬동한다. 우리의회에 결의로써 교육위원회 측에 그 조사를 건의함이 좋을 것 같다. 동의집이 수락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 기왕 통과된 예산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항목 유용 같은 것은 삼가 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각 학교에 지출하는 예산도 현금으로 할 것이며 각 학교별 부담금도 없도록 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주기 요망한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를 선언하다. ( 하오 5시 40분 )

- 곧이어 제 90회 폐회식이 있었다.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도 1월 5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임 석 희

작성자 서기 주 도 식